공고 제 5 호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7년 03월 29일

풍양면장 인

세대주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진**	진** 1965-08-14	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삼탄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7-03-23